

주주님께

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, 정관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 아 래 ---

1. 일시 : 2019년 3월 29일(금) 오전 9시
2. 장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공원 본관 1층
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
(※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,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.)
3. 회의 목적사항
 - 가. 보고 사항 :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
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
 - 나. 부의 안건
 - 제1호 의안 : 제12기(2018.1.1~2018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
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 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- 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 - 제3-1호 의안 : 사내이사 이재원 선임의 건
 - 제3-2호 의안 : 사외이사 김보형 선임의 건
 - 제4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김보형 선임의 건
 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- 제6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 -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였고, 금융

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
- 주주님께서서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시 : 신분증
- 대리행사 시 : 위임장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신분증

별첨 1 : 위임장

별첨 2 :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

2019년 3월 7일

인크로스 주식회사
대표이사 이재원 "직인생략"

■ 별첨 1

위 임 장

[대리참석용]

■ 소 속 :

■ 성 명 :

■ 주민등록번호 :

위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인크로스(주)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,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.

■ 소유주식 현황

성 명	주주번호	주 식 수	비 고

주 소 :

성 명 : (주주 인감 날인)

* 첨부 : 주주인감증명서 1부. (대리참석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)

인크로스(주) 대표이사

귀하

■ 별첨 2 (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)

□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8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 ①~② (생략) ③ <u>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 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</u></p>	<p>제8조 (주식의 종류)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삭제</p>	<p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전자증권법)」에 따라 조항 삭제</p>
<p>(신설)</p>	<p>제8조의 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<u>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.</u></p>	<p>전자증권법에 따라 조문 신설</p>
<p>제8조의 2 (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	<p>제8조의 3 (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	<p>조문번호 변경</p>
<p>제8조의 3 (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	<p>제8조의 4 (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	<p>조문번호 변경</p>
<p>제8조의 4 (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	<p>제8조의 5 (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</p>	<p>조문번호 변경</p>
<p>제8조의 5 (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① (생략) ② 4종 종류주식의 배당우선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을, 종류주주의 전환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3 제7항을, 종류주주의 상환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4 제7항,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.</p>	<p>제8조의 6 (4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) ① (현행과 동일) ② 4종 종류주식의 배당우선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3 제2항 내지 제6항을, 종류주주의 전환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4 제7항을, 종류주주의 상환권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5 제7항, 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.</p>	<p>조문번호 변경</p>
<p>제12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② (생략)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,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<u>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</u>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12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,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<u>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</u>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(현행과 동일)</p>	<p>전자증권법에 따라 문구 정비</p>
<p>제13조 (주권의 명의개서 등) ① <u>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.</u> ② <u>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다.</u> ③ <u>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</u></p>	<p>제13조 <삭제></p>	<p>전자증권법에 따라 조문 삭제</p>

<p>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주식의 상속,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,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</p>		
<p>제14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,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</p> <p>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제12조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 <삭제></p>	<p>전자증권법에 따라 조문 삭제</p>
<p>제15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</p> <p>①~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0개월로 명칭 통일</p>
<p>제18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후(단, 공모 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한 후)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~⑥ (생략)</p>	<p>제18조 (전환사채의 발행)</p> <p>①~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후(단, 공모 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)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~⑥ (현행과 동일)</p>	<p>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0개월로 명칭 통일</p>

<p>제19조 (신주인수권부사채) ①~③ (생략)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후 (단,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<u>1월이 경과한 후</u>)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⑤~⑥ (생략)</p>	<p>제19조 (신주인수권부사채) 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후 (단,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<u>1개월이 경과한 후</u>)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 ⑤~⑥ (현행과 동일)</p>	<p>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0개월로 명칭 통일</p>
<p>제20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2조(명의개서대리인), 제13조(주권의 명의개서 등), 제14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</p>	<p>제20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2조(명의개서대리인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.</p>	<p>제13조, 제14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</p>
<p>제21조 (소집시기) ① (생략)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<u>3월</u>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제21조 (소집시기)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<u>3개월</u>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0개월로 명칭 통일</p>
<p>제33조 (이사의 원수)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<u>(신설)</u></p>	<p>제33조 (이사의 원수)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②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<u>이사회</u>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</p>	<p>「상법」 반영하여 조항 추가</p>
<p>제46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~⑤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46조 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~⑤ (현행과 동일) ⑥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<u>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</u>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「상법」 반영하여 조항 추가</p>
<p>제47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) ①~②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47조 (감사위원회의 직무) 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「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」의 규정에 따라 <u>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u> ④ <u>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</u></p>	<p>「상법」 및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반영하여 조항 추가, 문구 정비</p>

<p>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 (신설)</p> <p>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p>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⑧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	
<p>제49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)</p> <p>① 본 회사의 <u>대표이사(사장)</u>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<p>② (생략)</p> <p>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<u>대표이사(사장)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대표이사(사장)</u>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대표이사(사장)</u>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49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 등)</p> <p>① 본 회사의 <u>대표이사</u>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<u>대표이사</u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대표이사</u>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대표이사</u>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직위명 예시 삭제</p>
<p>(신설)</p>	<p>부칙 <2019. 3. 29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8조의 2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20조 개정 규정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 16일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 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</p>

□ 이사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추천인, 최대주주와의 관계,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이재원	1972.01.01	-	특수관계인	이사회
김보형	1971.10.16	사외이사	-	이사회
총 2명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, 약력,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이재원	<현>인크로스 대표이사	<전>텔코인 이사 <전>텔코웨어 전략기획팀장	-
김보형	<현>한국외국어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	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<전>서울대학교 BK21정보기술사업단 교수 <전>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	-

□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추천인, 최대주주와의 관계, 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김보형	1971.10.16	사외이사	-	이사회
총 1명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, 약력,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약력	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
김보형	<현>한국외국어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	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 <전>서울대학교 BK21정보기술사업단 교수 <전>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	-